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7. 25.(화) 11:00 < 7. 26.(수) 조간 > 배포 2023. 7. 25.(화)

의약품 해외 인허가 등 포괄·신속 수출심사 도입으로 국가 핵심기술 수출 애로 해소

- 산업기술 보호 지침 개정·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 핵심기술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포괄·신속 수출심사를 도입하는 '산업기술 보호 지침'을 7. 26.(수) 개정·공포한다.

이번 고시를 통해 ▲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인·허가 및 해외 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 도입하고, ▲ 해외 특허분쟁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특허출원 당시 공개되었던 기술자료만 이전하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설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약품의 해외 인허가를 위한 국가 핵심기술 수출승인은 약 1개월의 심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며, 국내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와의 공동연구는 연간 1회만 심사를 받으면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은 크게 완화되고 효율성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확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기술 확인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현재까지는 기업이 다른 법률 등에 의해 지정된 기술확인 증빙서류를 먼저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산업기술 확인을 신청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오늘부터 산업기술확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이 관련 서류 전부를 갖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https://www.kaits.or.kr, 02-3489-7033)에 신청할 경우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계속 기업 현장과 소통하면서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무역안보정책관 기술안보과	책임자	과 장	최성준 (044-203-4850)
		담당자	사무관	권한임 (044-203-485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1 **국가핵심기술 수출심사제도 개선(안)**

1. 개정 개요

○ 기술보호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기업의 부담은 덜어주기 위해 기술 유출 가능성이 낮은 국가핵심기술 수출에 대한 심사제도 개선

○ 수출 심사기간 단축으로 기업의 부담 완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 기대

2 주요 내용

[1] 완제의약품 해외 인허가를 위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제 도입

○ 의약품 해외 품목허가용 기술자료 대해 연간 사전 포괄승인 후, 실제 수출시에는 전문위원회 검토로 승인 (심사기간 단축)

[2] 해외 자회사와의 공동연구 시 연간 포괄심사제 도입

○ 국내 기관과 100%지분을 보유한 해외기관(자회사) 간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연간 사전 포괄심사(승인, 신고수리) 및 사후보고 (심사기간 단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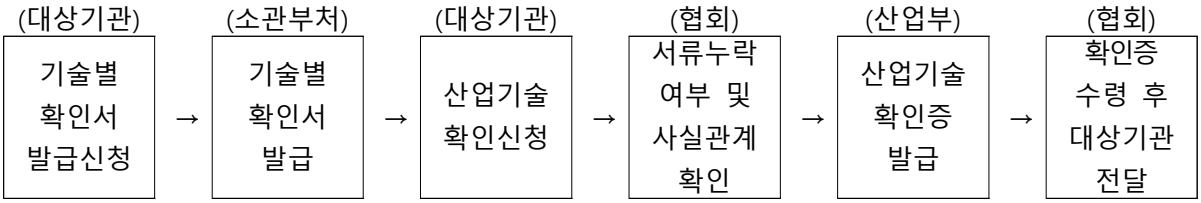
[3] 해외 디스커버리제도를 활용하는 특허분쟁 시 신속대응을 위한 기술자료 수출건은 대면 대신 서면검토를 우선 적용하여 심사기간 단축

[4]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면서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특허출원 당시 공개되었던 기술정보만을 이전되는 경우는 심의면제

붙임2 **산업기술 확인 원스톱서비스 도입 방안**

1.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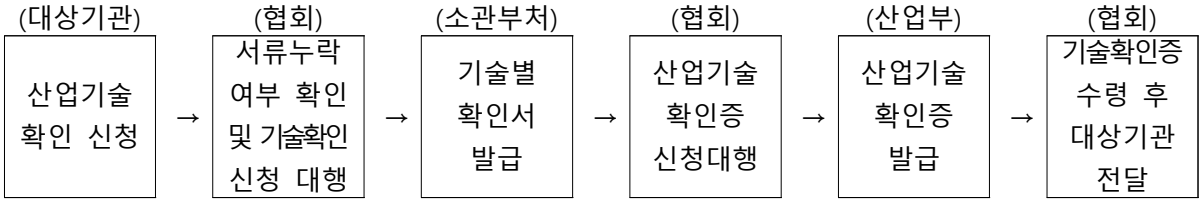
○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목에 해당되는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산업기술 해당여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 신청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3)



- 대상기관이 산업기술 확인을 받기 위해 기술별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은 후 신청해야 하는 부담

2. 개선방안

○ 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기술별 확인서 발급신청을 대행하는 원스톱 서비스 실시



○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각 산업기술별로 해당여부를 확인받은 경우 산업기술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입법예고 중)